
우리자산운용	연금WM 2711-0042	2026. 04. 10
수신	수신처 참고	
제목	소규모펀드 발생 안내의 건	

1. 귀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시공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- 아 래 -


가. 수시공시 사항 : 소규모펀드 발생

1. 관련 법령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의 5호

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(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

나. 대상 펀드 : **우리그로스증권투자신탁(주식)5호**

다. 소규모펀드가 된 날 : **2026년 04월 09일 (목)**

우리자산운용 
대표이사 최 승 재

* 수신처 : KB증권, LS증권, NH투자증권, 국민은행, 대신증권, 메리츠증권, 삼성생명, 삼성증권, 신영증권, 신한투자증권, 아이엠뱅크, 우리은행, 유안타증권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한국투자증권, 한화투자증권, 홍콩상하이은행, DB증권, IM증권, 경남은행, 교보증권, 미래에셋증권, 아이비케이투자증권, 하나증권, 현대차증권

소규모펀드(1개월) 공시

펀드명1(운용펀드)	펀드명2(투자자펀드)	펀드코드(운용펀드)	펀드코드(투자자펀드)	발생일자
우리그로스증권투자신탁(주식)5호	우리그로스증권투자신탁(주식)5호	KR5217200637	KR5217200637	2026-04-09

※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(설립)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,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